

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
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10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3.

2. 제안이유

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소집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, 재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정비(안 제8조제1항)
- 나. 위원회를 안전 발생 시 구성·운영하는 비상설로 전환(안 제8조 제2항 신설)
- 다. 비상설 위원회 전환에 따른 위원의 임기, 해촉, 소집요건 관련 조항 정비(현행 제10조 및 제11조 삭제)
- 라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2조제2호나목, 제7조제2항, 제8조제1항제1호)

4. 관계법령

-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제10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강행 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정비하고, 재난 등 안전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재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,
- 금천구 등 7개 서울시 자치구는 위원회 설치가 강행 규정이고, 강남구 등 13개 자치구는 위원회 설치가 임의 규정이며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됨.(붙임2 참조)
-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1. 관계법령 1부.

2. 서울시 자치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역위원회 현황 1부. 끝.

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1. 11. 19.] [법률 제18182호, 2021. 5. 18., 제정]

제9조(지역위원회)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으로 시·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(이하 “시·도 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고,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으로 시·군·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 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,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
2.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
3.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0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시·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 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② 시·도 위원회 및 시·군·구 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해당 지역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
 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 3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연번	부서명	강행규정	임의규정	조례 없음	비 고
총 계		7	13	5	
1	강 남 구		○		비상설
2	강 동 구		○		
3	강 북 구		○		
4	강 서 구		○		
5	관 약 구		○		
6	광 진 구			○	
7	구 로 구		○		
8	금 천 구	○			
9	노 원 구	○			
10	도 봉 구	○			비상설
11	동 대 문 구	○			
12	동 작 구		○		비상설
13	마 포 구	○			
14	서 대 문 구	○			노동기본 조례에 포함
15	서 초 구			○	
16	성 동 구	○			
17	성 북 구		○		
18	송 파 구			○	
19	양 천 구		○		
20	영 등 포 구		○		
21	용 산 구		○		
22	은 평 구		○		비상설
23	종 로 구			○	
24	중 구			○	
25	중 랑 구		○		비상설

※ 임의규정 13개, 강행규정 7개, 조례없음 5개, 비상설 5개